

# 제 안 설명서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 주 시

## 200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73

제출년월일 : 2003. 11.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제안 이유

우리시가 2004년도에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 내용

#### < 순흥면 지동리 알봉부지 매입 >

##### ○ 매입대상 재산현황

- 토지면적 : 3필지 1,534m<sup>2</sup>
- 지 목 : 담
- 소유자 : 순흥면 지동리 544-8 금옥연외 2인
- 공시지가 : 6,604,040원(추정가액 : 38,000천원)

##### ○ 추진기간 : 2003 ~ 2004년

##### ○ 재원대책 : 2003예산 및 2004 예산 확보

##### ○ 총사업비 : 98,000천원(2003년 기확보 18,000천원)

- 토지매입 : 38,000천원
- 지상물 : 15,000천원(사과나무 150주)
- 주변정비 : 45,000천원

- 알봉 복원 및 소공원조성

※ 매입대상토지는 분활 측량 완료하였으며 감정가에 의해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취득

○ 취득목적

- 순홍이 배출한 고려시대 문인 안축 선생의 봉서루 중수기에 옛 봉서루가 있는 위치에 고을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봉서루와 알봉 3개를 만들고 오동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 순홍역사문화유적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유적지에 봉서루와 알봉을 복원 정비하여 문화유적 보존과 아울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알봉 2개가 있으며, 유교문화권사업에 2005년에 봉서루 복원계획이 있음.

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붙임 참조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총괄표)
- 200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4. 관련법규

- 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③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서(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구 分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물건	기타			3	1,534	38,000	3	1,534	38,000
	1. 매입	토지	물건	기타			3	1,534	38,000	3	1,534	38,000
	2.교환으로취득	토지	물건	기타								
	3.기타취득	토지	물건	기타								
	계	토지	물건	기타								
	4. 매각	토지	물건	기타								
	5. 양여	토지	물건	기타								
처분	6.교환으로처분	토지	물건	기타								
	7.기타처분	토지	물건	기타								

## 200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취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비 고
	지목	소 계 지	수 량					
계		3 건	1,534	38,000				
1	토지	영주시 순흥면 지동리 544-8번지	789	19,580	2004년 하반기	순흥지역 봉서루에 암한 전설의 알봉을 복원 보존코자 함	순흥면 지동리 544 김 옥연	
2	"	영주시 순흥면 지동리 570-2번지	553	13,670	"	"	순흥면 지동리 400 김기수	
3	"	영주시 순흥면 지동리 570-3번지	192	4,750	"	"	순흥면 지동리 541 강인호	

## 관 련 법 규

### □ 지방재정법

-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1]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 ④〈삭 제 99·1·21〉

###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 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 ③ ~ ⑤ <생략>

##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삭 제 '95. 11. 18>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